

교원양성위원회 운영규정

[제정 2008.12.5., 최종개정 2023.7.24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7조의2에 의거 설치하는 교원양성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기능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
4.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중요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하되 당연직으로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며, 교직과정센터장은 부위원장이 된다.<개정 2012. 9. 1, 2015. 12.1.>

②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위원 중 외 부인사 및 졸업생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3. 7. 24.>

제4조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부서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8조(업무관장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교무처 교직과정센터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15. 12.1.>

제9조(재정)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)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규정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- ① 이규정은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규정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